

『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8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9월 2일

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고용창출 동기 유발로 실업률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
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
 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50% 감면 (안 제25조의3)

라. 참고사항

-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
-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(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- 234호)
- 경상북도 세정과-8585('10.6.16)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허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 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내용은

- 구미시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,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」에 의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%를 감면하는 내용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, 고용창출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